

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

첨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477호
- 나. 발의자 : 박환희 의원 외 26명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2월 6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9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3조)
- 나.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마.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제정안의 개요

-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문화재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.
- 동 제정안은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조제2항¹⁾ 및 문화재청의 「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을 참고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것임.

나. 문화재지킴이 사업 현황

(1) 문화재청 현황

-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“문화재지킴이 활성화 사업”을 시행해 왔으며, 사업의 활동가인 문화재지킴이를 전국에 약 6만9천여명을 위촉하여 일반 지킴이, 청소년 문화재지킴이,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등으로 구분되어 문화재 주변정화, 모니터링, 소개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.

1) 「문화재보호법」 제4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 ·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· 추진하여야 한다.

- 서울시 소재 문화재를 지키는 문화재지킴이는 총 1,618명으로(2023.1.1. 기준) 개인(80명), 가족(10가구, 23명), 단체(20단체, 1,515명)로 구성되어 있음.
- 이 중 서울시 소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대상 문화재는 총 69개로 국가 지정문화재 46개, 시지정문화재 23개로 구성되어 있음.

< 서울시 소재 문화재를 담당하는 “문화재지킴이” 현황 >

| 문화재 수 | 합 계 | 개인 | 가족 | 단체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총 69개 (국가 46, 시 23) | 1,618명 | 80명 | 23명 (10개 가구) | 1,515명 (20개 단체) |

(2) 서울시 현황

- 서울시의 경우 2003년부터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 사업과는 별개로 “내고장 문화재지킴이” 사업을 추진해 온바, 현재까지 총 3,913명의 문화재지킴이가 문화재 주변 환경미화, 문화재 모니터링, 문화재 안내, 순찰 등을 통해 문화재의 도난·화재·멸실 및 훼손 등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음.

<연도별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>

(단위 : 명)

| 연도 | 2003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2008 | 2009 | 2010 | 2011 | 2012 |
|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인원 | 70 | 99 | 121 | 122 | 123 | 130 | 119 | 122 | 126 | 286 |
| 연도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 2022 |
| 인원 | 326 | 276 | 290 | 262 | 257 | 250 | 247 | 238 | 226 | 223 |

- 2022년에는 22개 자치구에서 223명의 내고장 문화재지킴이가 활동하였으며,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일 13,000원(교통비: 5,000원, 급식비: 8,000원)의 활동비를, 월 최대 4회까지 지급하였음.
-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전체 문화재지킴이 참여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, 자치구별 등록 문화재 보유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인원 편중이 다수 발생하지만,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본부가 관성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분석됨.

<2022년 자치구별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현황>

(단위 : 명)

| 총계 | 종로 | 중구 | 용산 | 성동 | 광진 | 동대문 | 중랑 | 성북 | 강북 | 도봉 | 노원 |
|-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-|----|----|----|----|----|
| 223 | 47 | 27 | 10 | 3 | 6 | 1 | 2 | 7 | 14 | 2 | 20 |
| | 은평 | 서대문 | 강서 | 구로 | 금천 | 영등포 | 동작 | 관악 | 서초 | 송파 | 강동 |
| | 9 | 6 | 10 | 2 | 1 | 3 | 5 | 5 | 3 | 23 | 17 |

※ 2022년 미운영 자치구: 강남, 마포, 양천

다. 조례 제정의 필요성

-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인력 육성 또한, 훈련된 이탈자 발생 등으로 질적 향상 실현에 여러 난점이 존재하고 있음.
- 따라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행정적 체계나 협의기구를 통한 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입법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.
- 참고적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사례를

살펴보면 충남, 경남, 충북, 경북 등 4개 도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,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 계승·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다만 2023년 예산안 수립 시 문화본부 내 문화재돌봄,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등 유사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문화재지킴이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 미편성된 바가 있으므로,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기 종료된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사업 참여자의 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을 준비할 필요성은 있음.

라. 주요 조문별 검토

(1) 문화재지킴이의 정의(안 제2조)

- 안 제2조는 「문화재지킴이를 「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.
- 그러나 해당 규정의 관련 법령인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5조²⁾에 따르면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은 문화재청장의 소관사무로 명시되어 있어 문화재 청장이 위촉한 「문화재지킴이」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.
- 따라서 문화재지킴이의 정의를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인원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안함.

2) 「문화재보호법」 제15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보호·보존·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·육성할 수 있다.

<안 제2조 수정의견>

| 제 정 안 | 수 정 의 견 |
|--|---|
| 제2조(정의) “문화재지킴이”란 「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. | 제2조(정의) “문화재지킴이”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. |

(2)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
- 안 제3조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문화재의 보호활동 육성을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.

(3) 시장의 노력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
- 안 제5조는 시장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임.
 - 안 제5조제2항은 시장이 청소년을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, 일반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문화재지킴이로 활용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이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과 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풍토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6조는 시장이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명시한 규정으로, 이미 문화본부에는 서울성곽지킴이와 같이 시민참여형

문화재 보호활동 사업이 존재함으로 예산지원 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-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홍보, 교육의 시행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, 교육훈련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음.

(4) 포상(안 제9조)

- 안 제9조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해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.
- 다만 ‘1년마다’라는 규정은 단기간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주 수정이 필요하며, 포상과 관련된 사항인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수여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<안 제9조 수정의견>

| 제 정 안 | 수 정 의 견 |
|---|--|
| 제9조(포상) 서울시장은 <u>1년마다</u>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<u>대하여</u> 포상할 수 있다. | 제9조(포상) ----- 문화재 ----- ----- ----- -- <u>대하여</u>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<u>따라</u> -----. |

의안번호
0477

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발의 | 제안자 박환희 의원 | 제안일자 2023.2.6 | 소관 상임위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|
| 주요내용 | <p>〈제정이유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울시 문화재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 <p>〈주요 입법 요지〉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‘시의 책무’, ‘체계적인 추진’, ‘협력체계 구축’, ‘지원’, ‘홍보’, ‘교육’ 등에 관한 사항 규정 | | |
| 추진경과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23.2.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발의 | | |
| 부검토의견 | 원안가결() / 수정가결(√) / 부결() / 보류() | | |
| 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동 조례(안)에서 규정하는 ‘문화재지킴이’는 훈령인 「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으로, 문화재청장이 전국 단위로 매년 분기별 위촉한 문화재지킴이만을 대상으로 함 ○ 이에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‘문화재지킴이’ 활동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장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○ 따라서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“문화재지킴이”에 대한 제2조(정의)를 “자발적으로 우리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” 등 포괄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| | |
| 대응방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| | |
| 상임위 처리결과 | | | |
| 향후계획 | | | |
| 담당부서 | 문화재관리과 | 팀장 | 윤선희(☎2133-2652) |
| | | | 담당 |
| | | | 이혜숙(☎2133-2658) |